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67

발의연월일: 2020. 11. 5.

발 의 자: 민홍철・김진표・김병주

안규백 · 송영길 · 진선미

이학영 · 이병훈 · 임호선

김수흥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,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.

그런데,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용어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이에 권위주의의 탈피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해 '刑務所'라는 용어를 '교정시설'로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66조부터 제68 조까지). 법률 제 호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 중 "刑務所內"를 "교정시설 내"로 한다.

제67조 중 "刑務所內"를 "교정시설 내"로 한다.

제68조 중 "刑務所"를 "교정시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第66條(死刑) 死刑은 <u>刑務所內</u> 에 | 第66條(死刑) <u>교정시설</u> |
| 서 絞首하여 執行한다. | <u> 내</u> |
| 第67條(懲役) 懲役은 刑務所內에 | 第67條(懲役)교정시설 |
| 拘置하여 定役에 服務하게 한 | <u> 내</u> |
| 다. | |
| 第68條(禁錮와 拘留) 禁錮와 拘留 | 第68條(禁錮와 拘留) |
| 는 <u>刑務所</u> 에 拘置한다. | <u>교정시설</u> |